# 하도급분쟁조정 처리 결과

(1999. 12. 11~2000. 1. 12)

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,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제3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('99. 12. 10) 이후 신고된 사건의 주요 분쟁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## 조정 합의(2건)

### ■ 노산건설㈜의 건설하도급분쟁건(사건번호 9911조의037)

- 추가공사대금을 54,000천원으로 정산합의하고 대금 지급 완료.

#### 분쟁요지

- 신고인은 1999. 2. 26 연천 · 전곡간 하수도공사(253,000천원) 및 동 현장 추가공사(249,700천원)를 각각 계약하여 시공 중 민원발생(피신고인 책임사유)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, 피신고인이 공사비 정산금 및 지연이자 등 총 124,419천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.
-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과다한 정산금액을 요구하고 정산확인에 응하지 않아 대금이 미지급되었으며,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공사비 정산에 대한 내역 제시도 없이 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정산금액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.

#### 검토의견

- 피신고인이 신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를 중도 타절하게 하면서 정산을 지연하고 대금을 미지급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6항 위반.

#### 조정사항

- 양 당사자는 신고인의 청구금액(124,419천원)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검토 후 정산금액을 54,000천원으로 합의하고 신고인이 미반납한 양수기(3대)대금과 신고인에게 지급해야할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(약 3,000천원)를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이행 완료함.

### ■ ㈜풍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(사건번호 9911직신038)

-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금을 232,318천원으로 합의함.

#### 분쟁요지

-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하도급대금 188,447천원,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12,045천원과 기타 37,996천원을 미지급하였으며 부당하게 18%의 이자를 공제하였다고 주장.

• 피신고인은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.

### 검토의견

•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어음할인료 및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등을 미지급하였고, 일부 하도급대금을 현금결재한다는 이유로 시중 어음할인율을 적용하여 부당감액(18%이자 공제)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하도급법 제11조제1항제2항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6항제7항 위반함.

### 조정사항

• 피신고인은 하도급대금 등 총232,318천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함.

## 조정 불개시(3건)

### 피신고인 요건 결여(2건)

#### ■ ㈜성덕종합건설의 건설하도급분쟁건

**분쟁요지**

• 피신고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부도로 발생한 분쟁.

**검토의견**

• 원사업자의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직전년도 매출액이 30억 미만으로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님.

**조치사항**

• 신고인에게 신고서 반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

#### ■ 동성물산의 제조하도급분쟁건

**분쟁요지**

• 피신고인의 공장시설물인 열건 및 UV도장설비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분쟁

**검토의견**

• 원사업자의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으로 하도급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님.

• 신고인이 제작 설치한 열건 및 UV도장설비는 피신고인이 업으로 하는 제품(병마개 제조)을 특수도색하기 위한 공장 시설물로서 하도급법 제2조제6항의 제조위탁에 해당되지 않음.

**조치사항**

• 신고인에게 신고서 반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

조정대상 미해당(1건)

## ■ 동아토건㈜의 건설하도급분쟁건

### 분쟁요지

• 피신고인이 담양군 추성경기장 정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였다하여 발생한 분쟁.

### 검토의견

• 신고인은 계약 후, 착공없이 계약을 포기하였음에도 시공이 없는 하도급계약서상의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조정대상이 없음.

### 조치사항

• 조정할 대상이 없는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

## 조정 불성립(2건)

## ■ ㈜왕벌의 제조하도급분쟁건

### 신고내용

• 피신고인이 원사의 제조 납품과 관련하여 신고인에게 하자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재가공비용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이를 감액함.

### 조치사항

• 신고인이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(광주)로 이첩.

## ■ 시온종합건설㈜의 건설하도급분쟁건

### 신고내용

• 피신고인이 공사를 중단시키면서 기초철근콘크리트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함.

### 검토의견

• 피신고인에 대한 2회에 걸친 출석요구서가 반송되어 조정 불가.

### 조치사항

•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함.

### ◈ 분쟁조정건 접수 및 처리현황 ◈

1. 12 현재

| 구 분 | 접수현황 | | | 조정 | | | | 조사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계 | 제조 | 건설 | 성립 | 불성립 | 불개시 | 요건미달 | 합의 | 진행 |
| 조정의뢰 | 18 | 2 | 16 | 13 | 3 | 1 | 1 | 1 | 1 |
| 직접신고 | 32 | 18 | 14 | 5 | 9 | 2 | 8 | 1 | 6 |
| 계 | 50 | 20 | 30 | 18 | 12 | 3 | 9 | 2 | 7 |